

상무1.2지구 및 주변 비택지개발지역(유촌동) 행정구역(법정동경계) 변경계획 의견요구안

▣ 조 정 사 유

-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부고시 제269호('93. 7.29)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건설부고시 제329호('94. 9.10)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고시 및 개발계획승인가시되어 사업추진중에 있는 상무1.2지구 사업준공이 임박해 옴에 따라
- 서로 다른 행정구역(유촌동, 치평동, 마록동, 쌍촌동)이 병존하여 현재 동간 경계대로 확정시 1필지에 2개의 지번이 존치되어 주민들 토지사용과 추후 아파트, 일반주택등 건축물 신축시 경계불명을 초래하므로 주민편익 도모를 위해
- 상무1지구내 유촌동 281-3외 145필지를 인접동인 치평동으로, 광주광역시 청 진입로(35m)를 기점으로 치평동 21-6외 12필지를 인접동인 쌍촌동으로, 마록동 162-1외 38필지를 인접동인 치평동으로 또한 상무2지구내 치평동1-1외 77필지를 인접동인 유촌동으로, 쌍촌동 812-2외 5필지를 유촌동으로 하고, 상무1지구 개발로 인한 불합리한 경계를 이루는 비택지개발지구인 유촌동 291-1외 38필지를 광주천을 기점으로 연접한 치평동으로 행정구역(법정동경계)을 변경하여 법정동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 법정동 경계조정 현황

지 구 별	조정전 법정동	조정후 법정동	필 지 수	면 적 (㎡)
상무1지구	유 촌 동	치 평 동	146	363,859
	치 평 동	쌍 촌 동	13	92,952
	마 른 동	치 평 동	39	22,252
상무2지구	치 평 동	유 촌 동	78	2,558
	쌍 촌 동	유 촌 동	6	1,190
	유 촌 동	치 평 동	39	29,646

▣ 검 토 의 건 (전문위원 박종근)

- 상무신도심 1. 2지구는 사업면적 971천평으로 95 ~ 98년까지 공사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5월부터 주민입주가 시작되어 8. 31 현재 5,065세대 17,728명이 이주를 마쳤으며,
- 상기지역에 4개의 법정동인 쌍촌동, 유촌동, 마륵동, 치평동이 경계를 이루고 있어 당초 경계대로 확정시 1필지가 2개동으로 접하게 되어 동간 경계 산만과 생활권의 분리로 입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 접경지역 도로를 중심 경계를 확정하여 토지대장, 동기부등본 정리로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별히 심사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무4지구 행정구역(법정동경계) 변경계획 의견요구안

▣ 조 정 사 유

- 대한주택공사에서 건고 제1995-53호('95. 3.17)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광고 제1995-147호('95.11. 3)로 택지개발계획승인 고시되어 주택공사에서 사업추진중에 있는 상무제4지구 사업준공이 임박해옴에 따라
- 서로 다른 행정구역(유촌동, 쌍촌동)이 병존하여 현재 동간 경계대로 확정 시 1필지에 2개의 지번이 존치되어 주민들 토지사용과 추후 아파트, 일반 주택 건축시 경계불명을 초래하므로 주민편익 도모를 위해
- 상무4지구내 쌍촌동 699-1외 351필지(285,748㎡)를 인접동인 유촌동으로, 대로(80M)와 소로(15M)를 기점으로 행정구역(법정동)경계를 변경하여 법정 동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확정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 법정동 경계조정 현황

지 구 별	조정전 법정동	조정후 법정동	필 지 수	면 적 (㎡)
상무4지구	쌍 촌 동	유 촌 동	257	218,792

▣ 검 토 의 건

- 상무4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쌍촌동과 유촌동 지역으로 단지 북쪽에 위치하며 대한주택공사에서 시공 사업준공이 임박해옴에 따라
- 급후 주민들의 토지사용과 아파트, 일반주택 건축시 경계불명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므로 대로(80M)와 소로(15M)를 기점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코자 한 내용으로 면밀히 심사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關 聯 規 定

回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回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 3조 (위임·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의 일부(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를 그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回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 6조 (생활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回 생활보호법

제 8조 (생계보호의 내용) 생계보호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의복·음식물 기타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回 노인복지법

제 3조 (가족제도의 유지·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

回 모자복지법

제12조 (복지급여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생활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 지원비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중 생계비
4. 아동양육비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回 아동복지법

제10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시설등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시설·교통 기타 서어비스시설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동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부대하고 13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回 농지법

제 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 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농지의 분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받아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①시·구·읍·면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농지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화일(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로 본다.

⑤농지원부의 서식·작성·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등의 교부) ①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구·읍·면장은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回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사부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군 또는 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외국인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등록외국인기록표·외국인등록표 및 외국인등록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 이내에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근무처의 명칭과 직위(직위는 임원에 한한다)

回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 5조 (매장등의 신고) ①매장,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지, 화장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의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묘적부에 기재하고 그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묘지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외의 일정한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자 또는 연고자등으로 하여금 분묘에 대한 일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